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동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원리금보장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을 통하여 효율적 자산운용 기회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2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2015.08.19. 현재, 세전, 연

구 분	내 용						
가 입 대 상	퇴즈	퇴직연금사업자					
가 입 기 간	1.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 6개월, 1년 ~ 5년까지 연단위 가입 가능						
	2.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 31일 ~ 5년 이내 만기일 자유로이 지정						
가 입 금 액	제한없음						
기 본 상 품	정기예금						
적용 이자율	예금 신규일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 적용						
	※ 2015.06.09. 현재 제도별 적용 이자율 (단						
	위 : %)						
		구 분	운용기간	DB	DC	IRP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6개월	1.66	1.66	1.66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1년	1.76	1.76	1.76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2년	1.86	1.86	1.86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3년	1.97	1.97	1.97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4년	2.08	2.08	2.08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5년	2.18	2.18	2.18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1개월 이상	1.60	1.60	1.60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3개월 이상	1.64	1.64	1.64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6개월 이상	1.66	1.66	1.66	

1.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 이자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이자율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1)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									
	지 요청시	□ 계약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								
중 도 해 지 이 자 율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이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자율								
	□ 수탁자의 사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계약기간 1년 이상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위경과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								
	□ 가입자의 사망	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	위경과기간 1년 이상 ²⁾ : 신규 또는 재예치								
	매매	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 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								
	□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선구에 애녕하는 이사 <u>활</u>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개인형IRP									
	에 한함)									
	□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IRP에 한함)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								
	□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예금의 이자율								
구 분	내 용									
	1)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이가가 「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 파산서고를 받으 경으									
	- 가입자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2)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경과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중 도 해 지	2. 일반 중도해지 이자율									
이 자 율	①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계약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자율 0.1%	0.5% 1.0%								
	②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중도해지적용 기준금리 ¹⁾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²⁾									
	주1) 중도해지적용 기준금리 : 신규(또는 재예치) 당시 고시금리									
	주2)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초과 0.5초과 0.6초과 0.7초과 0.8초과 0.9초과								
	/계약일수	0.50 ~0.60 ~0.70 ~0.80 ~0.90 ~1.00 ~1.00								
	중경과기간 41 대 대 대 · · · · · · · · · · · · · · · ·	내 내 내 만								
	변차등률 5% 10% 15% 20% 2	5% 30% 35% 40% 45%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1.0미만" 구간의 차등	률을 적용								
만기후 이자 ㅇ	예금의 만기시 자동재예치 되므로 만기후 이자율은 없음									
율	1.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	기가르 세하여 의그에 가사던 그래요 게세키								
만기재예치	2. 단,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에 관한 특역을 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재예치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은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에는									
	1년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으로 자동 7									

	• 원금과 이자 재예치
	• 재예치 횟수 제한 없음
	• 재예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 이자율을 재예치일 이자율로 적용
재예치의 처	• 동일한 계좌번호 사용 (계좌번호 변경 없음)
리	(예) 2011.06.01.에 2년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에 가입 하였다면, 예금만기일인 2013.06.01.에
	가입기간 2년의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재예치 됨.(*재예치예금의 신규일 : 2013.06.01./ 만기일
	: 2015.06.01.)
	• 단,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은 재예치시 계좌번호 변경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 가능.
	• 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분 할 해 지	경우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분할 해지 횟수에서 제외
	•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우 가입자별로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 가능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
	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
예금자	습니다.
보호여부	
	* 용어안내
	•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 :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제도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 대상 전용상품입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퇴직연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99-1111(서비스코드 : 예금상담 01)로 연락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a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